

# 2020년도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5. 4.(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6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442건(안건번호 제2020-17120호~1802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7120호는 불법복제물의 제공을 요청하는 본문과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전송한 댓글로 구성된 사안임. 불법복제물의 제공을 요청하는 본문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 평가할 수 있고, 토렌트 파일을 전송한 댓글은 저작권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7121호~17132호는 웹하드에서 만화, 출판, 영상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8012호~18020호는 일본 만화를 전송한 사안임. 만화 한 화 전체 분량인 점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될 여지는 거의 없고,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41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87건(안건번호 제2020-1701호~1787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1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76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75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20개 안건(19개 안건은 부결 사유 중복)}은 부결함

-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4개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1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등 모두 1,431개의 URL 정보에 관해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0-22838호~24268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4개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1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등 모두 1,431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0-6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게시물 내용, 저작물명, 7쪽의 저작물명, 플랫폼명, 검색 결과 정보, 8쪽의 사이트명, 게시물 제목, 움짤 내용, 유튜브 이용자명, OSP명, 채널명, 게시물 내용, 9쪽의 편집 내용, 게시물 관련 내용, 12쪽의 OSP명, 플랫폼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인 정보 제공 청구 심의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쪽~37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해 보임.
- B 위원: 동의함. 민원 내용과 관련 있음.

- C 위원: 같은 의견이며, 정보 제공 청구 회의록은 종전과 같이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D 위원: 동의함. 다만 회의록 28쪽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정정하도록 하겠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시물 내용, 저작물명, 플랫폼명, 검색 결과 정보, 사이트명, 게시물 제목, 움짤 내용, 유튜브 이용자명, OSP명, 채널명, 편집 내용, 게시물 관련 내용은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쪽~37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A 위원: 한편으로 해당 이용자들에게 만화는 공통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시정권고는 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C 위원: 동의하는 부분임. 그런 이유로 폐쇄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부결해왔음.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에는 과연 폐쇄적인 커뮤니티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음.
  - D 위원: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는 가입이 자유로움. 개방형 커뮤니티 사이트로 보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조회수가 상당히 높음.
  - B 위원: 보호원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은 웹하드 사이트를 위주로 모니터링함. 민원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커뮤니티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을 모니터링함.
- 안전번호 제2020-18013호~18020호 불법복제물은 '중점' 저작물에 해당함. '중점' 저작물은 긴급 대응 저작물을 제외한, 최신 저작물이나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요청이 있는 저작물 등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호원이 인정하는 저작물을 의미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18012호~1802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18012호~18020호는 OSP 성격이 개방형에 해당하고, 게시물 이용자들도 상당해 보이며, 최근에 발표된 중점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보임.

- A 위원: 게시자가 만화 한 화 전체 분량을 올린 점을 고려하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 B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만화 한 화 전체 분량을 올린 점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8012호~1802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7133호~18011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음악 '아로하 (가수: 조정석)'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17147호의 음원파일은 2020. 3. 27. 발매된 곡으로 앨범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Part 3'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melon]2020년 04월 18일 오전 01시 기준 top100'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ON (가수: 방탄소년단)', '사랑, 하자 (가수: 수호)', '돌덩이 (가수: 하현우(국카스텐))' 등 100곡의 인기 음원 파일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은 9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참고로 '아로하 (가수: 조정석)'는 멜론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음악 '덤더럼(Dumhdurum) (가수: Apink (에이핑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7148호의 음원파일은 2020. 4. 13. 발매된 곡으로 앨범 'LOOK'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신곡]apink - look'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해당 앨범의 수록곡인 7개의 음원 파일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은 5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참고로 해당 안건의 게시자는 안건번호 제2020-17147호의 게시자와 동일함.

(영화 '건즈 아킴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7258호는 2020. 4. 15.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411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8.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네이버 시리즈on'에서 10,000원에 구매 가능함.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영화 포스터도 보임.

(영화 '경호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7259호는 2020. 4. 16.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20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네이버 시리즈on'에서 7,000원에 구매 가능함. 해당 모바일 웹하드에서 제휴된 저작물은 아닌 것으로 보임.

(영화 '1917'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7427호는 2020. 2. 1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34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8.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31.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영상물에는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7531호는 2020. 2. 1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48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8.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4. 7.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정우성, 전도연, 신현빈 주연의 영화임.

(영화 '마이 스파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7548호는 2020. 4. 2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9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9.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안전의 모니터링 날짜는 2020. 4. 21.로 해당 영화가 국내 개봉하기 전에 웹하드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17133호~1801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모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C 위원: 해당 안전들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D 위원: 동의함.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단된 게시물의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7133호~18011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7120호~1802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

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5면부터 37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701호~1787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1개의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기로 의결하되, 나머지 76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75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20개 안전(19개 안전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o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3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37면부터 45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2838호~24268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11.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